|  |  |  |
| --- | --- | --- |
| **코로나-19 방역 관련 19가지 세수혜택 Q&A**  국가세무총국, 2020년 2월 26일  **Q1.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참여한 의료진과 방역업무 종사자가 정부규정표준에 따라 취득한 임시 업무보조금과 상여금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징수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인소득세 징수를 면제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A1:** <재정부, 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 지원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10호)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참여한 의료진과 방역업무 종사자가 정부규정표준에 따라 취득한 임시 업무보조금과 상여금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징수를 면제합니다. 정부규정표준은 각급 정부가 규정한 보조금과 상여금 표준을 포함합니다.  관련 인원이 현재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있고, 그 단위도 마찬가지로 비교적 큰 비중의 방역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관계자와 그 소속단위의 부담을 확실히 경감하기 위하여 상술한 인원이 취득한 임시 업무보조금과 상여금에 대해서 개인소득세 징수면제 우대를 향유할 때, 단위는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지급한 인원명단과 금액만 보존 비치하시면 됩니다.  **Q2. 개인이 취득한 정부규정표준의 코로나19 방역 임시 업무보조금과 상여금은 개인소득세 징수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그럼 개인소득세 납세신고도 면제가 가능하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참여한 의료진과 방역업무 종사자가 현재 코로나19 방역전선에 있고, 그 소속단위도 마찬가지로 비교적 큰 비중의 방역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도로 의료진, 방역업무 종사자 및 그 단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원이 취득한 임시 업무보조금과 상여금에 대해 단위는 신고를 처리하지 않아도 되며 단지 지급한 인원명단과 금액만 보존 비치하시면 됩니다.  **Q3. 코로나19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관하여 코로나19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업은 어떤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A3:** <국가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유관 세수 징수관리사항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4호)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어려움을 처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또한 주영업활동 수입 비중이 요구에 부합해야 합니다. 2020년도에 발생하는 결손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연한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정책을 향유하는 경우, 2020년도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시, 전자세무국을 통해 <이월결손금 공제연한 연장정책 적용에 관한 성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이월결손금 공제연한 연장정책 적용에 관한 성명>에 납세자명칭, 납세자식별번호(통일사회신용대마), 소속된 구체적인 업종 총 3가지 정보를 기입하고, 또한 정책규정에 부합하며 주영업활동 수입 비중이 요구에 부합하고 어려움에 처한 업종 해당하여 선택한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Q4. 당사는 약품화학설비 제조설치 회사로 전문적으로 약물추출, 농축설비를 제조합니다. 만약 당사가 현재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중점보장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면,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향유할 수 있나요?**  **A4:** <재정부, 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유관 세수정책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2020년 제8호)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중점보장물자를 생산하는 기업명단은 성급 및 그 이상의 발전개혁 부처, 공업과정보화 부처에서 확정합니다. 만약 귀사가 성급 및 그 이상 발전개혁 부처, 공업과정보화 부처에서 확정한 코로나19 방역 중점보장물자 생산기업이라면 생산량 확대를 위해 새로 취득한 관련설비는 기업소득세 세전공제에 일회성 당기원가비용으로 계상이 허용됩니다.  **Q5.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중점물자 생산기업의 일회성 공제정책에 관해, 만약 기업이 융자임대방식으로 설비를 취득하였다면 일회성 공제정책을 적용할 수 있나요?**  **A5:** <재정부, 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유관 세수정책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2020년 제8호)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중점보장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이 생산량 확대를 위해 새로 취득한 관련설비는 기업소득세 세전공제에 일회성 당기원가비용으로 계상이 허용됩니다. ‘구매하여 설치’는 현금 구매 또는 자체 건조한 2가지 형식을 포함하며, 단위 가치가 500만 이하인 설비, 기구의 일회성 세전공제 정책조건과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융자임대는 상술한 2가지 형식에 속하지 않으므로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중점보장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의 일회성 세전공제 정책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Q6. 지정병원이 이번 코로나19 방역업무를 지지하기 위해 발생한 특정지출은 기업소득세 가산공제정책을 적용할 수 있나요?**  **A6:** 현재까지 지정병원이 코로나19 방역업무에 발생한 지출에 대해 특수한 가산공제 우대정책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정병원 등 단위가 코로나19 방역업무를 지지하기 위해 발생한 연구개발비용 등 지출은 현행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우대정책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 가산공제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Q7.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중점물자 생산기업이 생산량 확대를 위해 새로 취득한 설비에 대해 기업소득세 세전 일회성 공제 정책을 허가하는데 취득설비의 공제금액은 500만 위안으로 제한되나요?**  **A7:** <재정부, 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유관 세수정책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2020년 제8호)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중점보장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이 생산량 확대를 위해 새로 취득한 관련 설비에 대해 단위 가치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것과 상관없이 모두 세전 일회성 공제가 가능합니다.  **Q8. 기업이 구매한 방호물자 예를 들어, 마스크, 방호복, 소독액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세전공제가 가능하나요?**  **A8:**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증빙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28호)규정에 따라 기업이 국내에서 발생한 지출항목이 증치세 과세항목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세무등기를 처리한 증치세 납세자일 경우, 그 지출은 세금계산서(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이 대리발행한 세금계산서 포함)를 세전공제 증빙으로 삼는다. 상대방이 법에 의거 세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위 또는 소액 단발성 경영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일 경우, 그 지출은 세무기관이 대리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취증빙 및 내부증빙을 세전공제 증빙으로 하되 수취증빙에는 수취단위명칭, 개인성명 및 신분증번호, 지출항목, 수취금액 등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Q9. 금번 코로나19 지정 병원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폐렴과 관련된 지출, 예를 들어 인건비, 소독비, 신설된 전용통로, CT실 칸막이 등에 대한 지출은 단일항목으로 입안이 가능하나요?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시, 연구개발비용에 따른 75% 추가공제가 가능하나요?**  **A9:** 지정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출이 만약 연구비용 범주에 해당할 경우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비용 추가공제정책을 적용할 수 있으나, 만약 현행규정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한 비용(연구개발비용, 장애인 급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추가공제정책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행 정책에 의거 지정병원에서 발생한 인건비, 소독비, 신설된 전용통로, CT실 칸막이 등의 지출은 기업생산경영 과 관련된 비용으로는 세전공제가 가능하나 추가공제를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Q10. 현(县)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부처를 통한 기부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정부의 어느 부처에 기증하여도 다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A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기부 세수정책 지원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9호) 규정에 따라 기업과 개인이 공익성사회조직 또는 현(县)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부처 등 국가기관을 통해 기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대응에 사용되는 현금과 물품은 과세소득액 계산 시 전액공제가 허용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정부부처(예를 들어 민정국, 위생국 등)를 막론하고 현(县)급 및 이상의 조건에 부합하고 국가기관범위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기부자가 그들을 통해 기부한 것에 대해 전액공제의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Q11. 기업으로서 당사가 코로나19 방역 중점물자 생산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신청이 필요한가요?**  **A11:** <재정부, 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유관 세수정책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2020년 제8호)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중점보장물자 생산기업 명단은 성급 및 그 이상의 발전개혁 부처 및 공업과정보화 부처에서 확정합니다. 현재 세무총국은 발전개혁위원회, 공업과정보화부와 명단에 관하여 논의 중에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사안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Q1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기부 세수정책 지원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9호) 제1조 규정에 따르면 기업과 개인이 공익성사회조직 또는 현(县)급 이상의 인민정부 및 그 부처 등 국가기관을 통해 기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대응에 사용되는 현금 및 물품은 과세소득액 계산 시 전액공제가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제1분기 기업소득세 신고 시 해당 정책을 바로 향유할 수 있도록 신고가 가능하나요?**  **A12:** 기업은 제1분기 신고 시 향유가 가능하고, 또한 <국가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유관 세수 징수관리사항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4호) 관련 요구에 근거하여 기부금 전액공제 상황을 기업소득세 납세신고서상 대응하는 란에 기입하고, 관련 자료는 보존 비치하시면 됩니다.  **Q13. 개인이 코로나19 대응 지정방지병원에 직접 의료용품을 기부할 경우, 병원은 개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수증에 성명, 신분증번호, 물품명칭과 수량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외에 기부물자의 금액도 함께 표기할 필요가 있나요? 만약 병원접수증에 금액이 표기되지 않을 경우, 개인소득세 공제 시 전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증명자료 제출이 필요한가요?**  **A13:** 의료보호물자 구매 시의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 구매 증빙을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Q14.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10호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참여한 의료진 및 방역업무 종사자가 정부규정표준에 따라 취득한 임시 업무보조금 및 상여금에 대해 개인소득세 징수를 면제합니다. 정부규정표준에는 각급 정부에서 규정한 보조금 및 상여금 표준이 포함됩니다. 성(省)급 및 성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한 인원에 대한 임시 업무보조금과 상여금을 규정하는 경우, 이를 비교 대조하여 집행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규정표준이라 함은 향(乡)진(镇)급 정부에서 발표한 표준도 가능한가요? 반드시 성급 및 성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규정한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한 인원의 임시 업무보조금과 상여금이어야만 비교 대조하여 개인소득세 징수 면제 집행이 가능하나요? 기타 인원들은 어떤 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A1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 지원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10호)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참여한 의료진 및 방역업무 종사자가 정부규정표준에 따라 취득한 임시 업무보조금 및 상여금에 대해 개인소득세 징수를 면제합니다. 성급 및 성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한 인원에 대한 임시 업무보조금과 상여금을 규정하는 경우, 이를 비교 대조하여 집행합니다.  그 중,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참여한 의료진 및 방역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부규정표준은 각급 정부에서 발표한 표준을 포함합니다. 상술한 인원 외 기타 코로나19 방역업무 참여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성급 및 성급 이상 인민정부가 규정한 유관표준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Q15. 개인이 협회에 기부한 후 협회에서 다시 현지병원에 방역업무를 위해 지원한 경우, 개인소득세전 전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A15:** 만약 협회가 공익성사회조직 조건에 부합한다면 개인이 해당협회를 통해 현지병원이 방역업무를 전개하는데 기부한 것이므로 개인소득세전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Q16.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중대한 손실 또는 엄중한 손해가 발생하여 납세자가 확실히 어려움이 겪는 기업이라면 방산세(부동산세), 성진토지사용세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감면정책을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A16:** 방산세 임시조례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납부하기에 확실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하여 기한을 정해 방산세 징수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성진토지사용세 임시조례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토지사용세를 납부하기에 확실히 어려운 상황이라 기한을 정해 감면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县)급 이상 세무기관이 비준합니다. 납세자가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납부하기에 확실히 어려울 경우에는 현지 유관규정에 따라 방산세와 성진토지사용세 2개 세목을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리방안은 현지 주관세무기관에 문의하시길 건의 드립니다.  **Q17. 코로나19 원인으로 기업이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이 방산세, 성진토지사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기업의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17:** 코로나19 원인으로 인해 기업의 중대한 손실을 입거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은 현지 인민정부와 세무부처가 발표한 방산세, 성진토지사용세 우대정책에 부합한다면 방산세와 성진토지사용세 2개 세목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현지 세무기관에 문의하시길 건의 드립니다.  **Q18. 당사는 복합형 주점으로 숙박과 요식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발표한 코로나19 기간 생활서비스에 관한 증치세 징수면제 정책을 유심히 보니 당사의 실제경영방식을 고려했을 때 숙박서비스 면세정책 향유를 포기하고, 요식서비스 면세정책만 향유할 수 있을까요?**  **A18:** <재정부, 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유관 세수정책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8호) 제5조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수입에 대해 증치세 징수를 면제합니다. 생활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는 <판매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 주석> (재세[2016]36호 인쇄발행) 규정에 따라 집행합니다. 생활서비스는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일상생활 수요에 만족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활동을 의미하며 체육서비스, 교육의료서비스, 여행오락서비스, 요식숙박서비스, 주민일상서비스와 기타 생활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숙박서비스와 요식서비스 2개 항목의 과세행위는 모두 생활서비스 범위에 속합니다.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 실시방법> (재세[2016]36호 첨부1.) 제48조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에게 발생한 과세행위에 대해 면세, 감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 면세, 감세를 포기하고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 감세를 포기한 후 36개월 내 다시 면세, 감세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귀 주점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요식서비스 증치세 징수면제 혜택을 향유하는 걸로 선택하실 수 있으며, 동시에 숙박서비스 증치세 징수면제 향유를 포기하면 포기한 후로 36월내 숙박서비스에 관해 증치세 징수면제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Q19. <국가세무총국의 세수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전염병 통제 저지전 승리에 조력하는 몇 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 (세총발[2020]14호) 제18항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기한을 넘겨 신고하거나 관련자료를 전달한 납세자는 행정처벌을 면제하고, 관련기록은 납세신용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한을 넘겨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잠정 현행 규정에 따라 비정상납세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규정한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은 징수관리 법률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연기를 신청하고 비준 후의 기간 후 신고를 의미하는 건지 규정된 기한에 맞춰 납세신고를 하지 못해 초래된 기간 후 신고를 의미하는지요?**  **A19:** 세총발[2020]14호 중 ‘기간 후 신고’는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진행할 수 없어 초래된 기한 후 신고를 의미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2월 28일에도 여전히 납세신고 또는 신고 연기를 처리할 수 없는 납세자는 적시에 세무기관에 서면으로 정당한 이유를 설명한 후, 신고연기 수속과 납세신고를 함께 사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관은 법에 의거 이에 대한 세금 체납금을 추가 징수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으며, 납세신용평가를 조정하지 않고, 비정상납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서면으로 설명한 정당한 이유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疫情防控税收优惠19问**  [国家税务总局](javascript:void(0);) ，2020年2月26日  **1.对参加疫情防治工作的医务人员和防疫工作者按照政府规定标准取得的临时性工作补助和奖金，免征个人所得税。这种个人所得税免征需要提供什么资料吗？**    **答：**《[财政部 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https://mp.weixin.qq.com/s?__biz=MzA5MjYzNDUwNw==&mid=2650443491&idx=2&sn=646aba6ae032d72935a68b398b58e77f&chksm=88640207bf138b11f48200bb3d5e5f3bd8a8382e923bf4e0c55fda34a617bd5af0385b65c22b&token=1889240105&lang=zh_CN&scene=21#wechat_redirect)》（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0年第10号）规定，对参加疫情防治工作的医务人员和防疫工作者按照政府规定标准取得的临时性工作补助和奖金，免征个人所得税。政府规定标准包括各级政府规定的补助和奖金标准。    　　考虑到目前相关人员正在疫情防治一线，其单位同样承担较重防治任务，为切实减轻有关人员及其单位负担，此次对上述人员取得的临时性工作补助和奖金享受免征个人所得税优惠时，支付单位无需申报，仅将发放人员名单及金额留存备查即可。    **2.个人取得政府规定标准的疫情防治临时性工作补助和奖金免征个人所得税，请问是否可以免做个人所得税纳税申报？**    **答：**可以。考虑到参加疫情防治工作的医务人员和防疫工作者正在疫情防治前线，其单位也同样承担较重防治任务，为最大限度减轻医务人员、防疫工作者及其单位负担，对这些人员取得的临时性工作补助及奖金，单位免于办理申报，仅需将支付人员名单及金额留存备查即可。    **3.请问受疫情影响较大的困难行业，需要企业提供什么证明材料，以证明受到疫情的较大影响呢？**    **答：**根据《[国家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征收管理事项的公告](https://mp.weixin.qq.com/s?__biz=MzA5MjYzNDUwNw==&mid=2650443794&idx=2&sn=c7408ce4bc7da7f1399b3aacc5ee633f&chksm=88641cf6bf1395e019f9f935c0fa68c81a62cd9541594cfab40a52c5034336057ed14dfc2039&scene=21#wechat_redirect)》（国家税务总局公告2020年第4号）规定，纳税人应自行判断是否属于困难行业企业，且主营业务收入占比符合要求。2020年度发生亏损享受亏损结转年限由5年延长至8年政策的，应在2020年度企业所得税汇算清缴时，通过电子税务局提交《适用延长亏损结转年限政策声明》。纳税人应在《适用延长亏损结转年限政策声明》填入纳税人名称、纳税人识别号（统一社会信用代码）、所属的具体行业三项信息，并对其符合政策规定、主营业务收入占比符合要求、勾选的所属困难行业等信息的真实性、准确性、完整性负责。    **4.我公司是一家药化设备制造安装公司，专门制造药物提取、浓缩设备，如果我公司现在能够申请对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生产企业的话，是否可以享受相关疫情政策？**    **答：**按照《[财政部 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政策的公告](https://mp.weixin.qq.com/s?__biz=MzA5MjYzNDUwNw==&mid=2650443491&idx=1&sn=6b1d966619db1dd6999e7ee91073bc96&chksm=88640207bf138b11a83d4203fe0362e211981d80a82158017f96e8dd29f2be1eafa9bb2bb2c2&scene=21#wechat_redirect)》（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0年第8号）的规定，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生产企业名单，由省级及以上发展改革部门、工业和信息化部门确定。如你公司由省级及以上发展改革部门、工业和信息化部门确定为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生产企业，为扩大产能新购置的相关设备，允许一次性计入当期成本费用在企业所得税税前扣除。    **5.疫情防控重点物资生产企业一次性扣除政策，如果企业是通过融资租赁方式取得的设备，这个是否能适用一次性扣除政策呢？**    **答：**《财政部 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政策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0年第8号）的规定对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生产企业为扩大产能新购置的相关设备，允许一次性计入当期成本费用在企业所得税税前扣除。“购置”包括以货币形式购进或自行建造两种形式，与单位价值500万元以下设备、器具一次性税前扣除政策口径保持统一。融资租赁不属于上述两种形式，因此不能适用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生产企业一次性税前扣除政策。    **6.请问定点医院为支持此次疫情防控工作发生的一些特定支出是否可以享受企业所得税加计扣除政策？**    **答：**目前尚未针对定点医院为疫情防控工作发生的支出出台特殊的加计扣除优惠政策。但定点医院等单位为支持疫情防控工作发生的研发费用等支出，符合现行研发费用加计扣除优惠政策规定的，可以享受加计扣除优惠政策。    **7.请问对疫情防控重点物资生产企业扩大产能购置设备允许企业所得税税前一次性扣除政策中，购置设备的扣除金额受500万元限制吗？**    **答：**根据《财政部 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政策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0年第8号）的规定，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生产企业为扩大产能而新购置的相关设备，无论单位价值是否超过500万元，均能在税前一次扣除。    **8.请问企业购买的防护物资如口罩、防护服、消毒液等，无法取得发票的，能在税前扣除吗？**    **答：**根据《[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企业所得税税前扣除凭证管理办法>的公告](https://mp.weixin.qq.com/s?__biz=MzA5MjYzNDUwNw==&mid=2650425720&idx=1&sn=c04e315c4b9176118172a32f0f4d8135&scene=21#wechat_redirect)》（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28号）规定，企业在境内发生的支出项目属于增值税应税项目的，对方为已办理税务登记的增值税纳税人，其支出以发票（包括按照规定由税务机关代开的发票）作为税前扣除凭证；对方为依法无需办理税务登记的单位或者从事小额零星经营业务的个人，其支出以税务机关代开的发票或者收款凭证及内部凭证作为税前扣除凭证，收款凭证应载明收款单位名称、个人姓名及身份证号、支出项目、收款金额等相关信息。    **9.请问这次疫情定点医院发生的与新冠肺炎有关的支出，如：人工费、消毒费、新建专门通道、隔断CT室等支出是否可以可单独立项，在企业所得税汇算清缴时按研究开发费用加计75%扣除？**    **答：**定点医院发生的与疫情相关的支出，如属于研发费用范畴的，可以按相关规定适用研发费用加计扣除政策，如不属于现行规定可加计扣除的费用范围（研发费用、残疾人员工资）的，暂不能适用加计扣除政策。因此，就目前政策而言，定点医院发生的人工费、消毒费、新建专门通道、隔断CT室等支出，可以作为与企业生产经营有关的费用进行税前扣除，但不能实行加计扣除。    **10.通过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部门捐赠，怎么理解？向政府哪个部门捐赠都可以吗？**    **答：**根据《[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捐赠税收政策的公告](https://mp.weixin.qq.com/s?__biz=MzA5MjYzNDUwNw==&mid=2650443491&idx=3&sn=95eb44dafd288ee880a67e15b92f5754&chksm=88640207bf138b11d4e1cc1787fb78276cd4245767c0b0cc3a4390b3ce19fdd8f2fd451ef83a&token=1889240105&lang=zh_CN&scene=21#wechat_redirect)》（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0年第9号）规定，企业和个人通过公益性社会组织或者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部门等国家机关，捐赠用于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的现金和物品，允许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全额扣除。因此，不论哪个政府部门（如民政局、卫生局等），只要符合县级及以上的条件且属于国家机关范围，捐赠者通过他们捐赠就可以享受全额扣除的优惠政策。    **11.我作为一家企业，如何知晓自己是否属于疫情防控重点物资生产企业？是否需要申请？**    **答：**按照《财政部 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政策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0年第8号）规定，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生产企业名单，由省级及以上发展改革部门、工业和信息化部门确定。目前税务总局与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就名单一事正在对接，将尽快明确相关事宜。    **12.《财政部 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捐赠税收政策的公告》（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公告2020年第9号）第一条规定，企业和个人通过公益性社会组织或者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部门等国家机关，捐赠用于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的现金和物品，允许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全额扣除。那么在第一季度申报企业所得税时就可以申报享受该政策吗？**    **答：**企业可在第一季度申报享受，并根据《国家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征收管理事项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20年第4号）有关要求，将捐赠全额扣除情况填入企业所得税纳税申报表相应行次，相关资料留存备查。    **13.个人直接捐赠给抗击疫情定点防治医院的医疗用品，医院需要给个人开具接收函。接收函除了注明姓名、身份证号、物品名称和数量等，还需要注明捐赠物资的价值吗？如果医院接收函未写明金额，那么个人所得税扣除时需要提供哪些证明材料才能够全额扣除？**    **答：**可留存购买医疗防护物资时的发票、购物小票等购买凭证。    **14.**[**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0年第10号**](https://mp.weixin.qq.com/s?__biz=MzA5MjYzNDUwNw==&mid=2650443491&idx=2&sn=646aba6ae032d72935a68b398b58e77f&chksm=88640207bf138b11f48200bb3d5e5f3bd8a8382e923bf4e0c55fda34a617bd5af0385b65c22b&token=1889240105&lang=zh_CN&scene=21#wechat_redirect)**规定，对参加疫情防治工作的医务人员和防疫工作者按照政府规定标准取得的临时性工作补助和奖金，免征个人所得税。政府规定标准包括各级政府规定的补助和奖金标准。对省级及省级以上人民政府规定的对参与疫情防控人员的临时性工作补助和奖金，比照执行。那么，政府规定标准是否可以是乡（镇）级政府出台的标准？对于其他人员必须是省级及省级以上人民政府规定的对参与疫情防控人员的临时性工作补助和奖金，才能比照执行免征个人所得税吗？**    **答：**按照《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0年第10号）规定，对参加疫情防治工作的医务人员和防疫工作者按照政府规定标准取得的临时性工作补助和奖金，免征个人所得税。对省级及省级以上人民政府规定的对参与疫情防控人员的临时性工作补助和奖金，比照执行。    　　其中，参加疫情防治工作的医务人员和防疫工作者的确定的政府规定标准，包括各级政府出台的标准。对于上述以外的其他参与疫情防控人员，应按照省级及省级以上人民政府规定有关标准执行。    **15.请问个人捐款给协会再给当地医院来支持防疫工作，可以在个人所得税前全额扣除吗？**    **答：**只要协会符合公益性社会组织的条件，那么个人通过该协会给当地医院开展防治防疫工作的捐赠，可在个人所得税前全额扣除。    **16.因受疫情影响遭受重大损失或发生严重亏损，纳税人确有困难的企业，对于房产税、城镇土地使用税有什么减免政策？怎么申请？**    **答：**房产税暂行条例规定，纳税人纳税确有困难的，可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确定，定期减征或者免征房产税。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规定，纳税人缴纳土地使用税确有困难需要定期减免的，由县以上税务机关批准。纳税人受疫情影响发生重大亏损导致纳税确有困难的，可按当地有关规定申请房土两税困难减免，具体办理建议咨询当地主管税务机关。    **17.请问因疫情原因导致企业重大损失或正常生产经营活动受到重大影响的中小企业可申请减免房产税、城镇土地使用税吗？企业的申请流程是什么？**    **答：**因疫情原因导致企业重大损失或正常生产经营活动受到重大影响的中小企业，如符合当地人民政府和税务部门出台的房产税、城镇土地使用税优惠政策，可申请享受房土两税减免。申请流程建议向当地税务机关咨询。    **18.我公司是一家综合型酒店，兼营住宿和餐饮业务。关注到国家出台了疫情期间生活服务免征增值税政策，考虑到我公司的实际经营模式，可以放弃享受住宿服务免税政策，只享受餐饮服务免税政策吗？**    **答：**《财政部 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政策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0年第8号）第五条规定，对纳税人提供生活服务取得的收入，免征增值税。生活服务的具体范围，按照《销售服务、无形资产、不动产注释》（财税〔2016〕36号印发）规定执行。生活服务，是指为满足城乡居民日常生活需求提供的各类服务活动，包括文化体育服务、教育医疗服务、旅游娱乐服务、餐饮住宿服务、居民日常服务和其他生活服务。住宿服务和餐饮服务这两项应税行为，均属于生活服务的范围。    　　《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实施办法》（财税〔2016〕36号附件1）第四十八条规定，纳税人发生应税行为适用免税、减税规定的，可以放弃免税、减税，按规定缴纳增值税。放弃免税、减税后，36个月内不得再申请免税、减税。    　　你酒店可以按照上述规定选择享受餐饮服务免征增值税优惠，同时放弃享受住宿服务免征增值税，一经放弃，36个月内不得再就住宿服务申请免征增值税。    **19.我看到《**[**国家税务总局关于充分发挥税收职能作用 助力打赢疫情防控阻击战若干措施的通知**](https://mp.weixin.qq.com/s?__biz=MzA5MjYzNDUwNw==&mid=2650443745&idx=1&sn=9e9d17db37e8919a1c679fe7a3e408c3&chksm=88640305bf138a131ffc62b361c96f52c1dfe9d48e95c23fa0acea89e587f50fc65b70f35371&token=972249938&lang=zh_CN&scene=21#wechat_redirect)**》（税总发〔2020〕14号）第十八项规定：“对受疫情影响逾期申报或逾期报送相关资料的纳税人，免予行政处罚，相关记录不纳入纳税信用评价；对逾期未申报的纳税人，暂不按现行规定认定非正常户。”请问这个文件里面规定的“逾期申报”是指按征管法规定向税务机关申请延期并且核准后的逾期申报，还是指未按规定期限进行纳税申报导致的逾期申报？**    **答：**税总发〔2020〕14号中的“逾期申报”是指纳税人未按规定期限进行纳税申报导致的逾期申报。需要注意的是，受疫情影响到2月28日仍无法办理纳税申报或延期申报的纳税人，可及时向税务机关书面说明正当理由后，补办延期申报手续并同时办理纳税申报。税务机关依法对其不加收税款滞纳金、不给予行政处罚、不调整纳税信用评价、不认定为非正常户。纳税人应当对其书面说明的正当理由的真实性负责。 |